대구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



[시행 2024. 1. 1.] [규칙 제3096호, 2023. 7. 10., 일부개정]

대구광역시(복지정책과)

- 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대구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지급액) 「대구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5조제1항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은 월 13만원으로 하고 구청장군수와 협의하여 지급한다.<개정 2020.7.10., 2023.7.10.>
- 제3조(지급방법 및 지급절차) ① 시장은 참전명예수당 지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구청장·군수에게 지원하고 그 지급에 관한 사항을 위임한다.
 - ② 구청장·군수는 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지급대상자에 대하여 자격요건 변동여부를 확인한 후 대상자를 확정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월 25일에 국가보훈처 수당 지급통장 또는 개별신청 통장으로 참전명예수당을 입금하여야 한다. 다만, 수당 지급일이 토·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입금한다.
- **제4조(지급 중단 및 회수)** 시장으로부터 참전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위임받은 구청장·군수는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중단하고 부당지급된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.
 - 1. 사망한 경우
 - 2. 전출한 경우
 - 3. 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대상이 아닌 경우
 - 4. 그 밖에 수당 지급대상이 아닌 경우
- 제5조(실적보고 및 집행잔액 반납) ① 제3조에 따라 참전명예수당 지급 위임을 받은 구청장·군수는 회계연도가 종료 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별지 서식의 실적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- ② 제1항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한 후 구청장·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금의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하여 시비보조금 반환금 예산액을 확보하여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.
- 제6조(감독) ① 시장은 참전명예수당 지급의 집행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급에 관한 장부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 - ② 시장으로부터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구청장·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부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**칙** <규칙 제2987호, 2020.7.10.>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규칙 제3096호, 2023.7.10.>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